

책임준공확약서

2018년 10월 31일

수신 : 주식회사 우리핀테크대부

서울 도봉구 노해로 []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성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문맥에 따라 “당사” 또는 “시공사”)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263-56번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의 건설을 담당하는 시공사로서, 당사, 주식회사 우리핀테크대부(이하 “대주”), []중앙건설 주식회사, 정중 [] 등과 사이에 체결된 2018년 10월 31일자 대출약정서(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변경된 계약을 총칭하여 이하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확약하고 보증합니다.

1. 당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 당사 또는 신탁회사에 대한 부도사유의 발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시, 기타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절차의 개시, 공사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본 사업 분양율의 저조, 공사도급계약 위반, 민원, 설계변경, 사업부지의 확보 여부, 본 사업 관련 인허가의 취소 또는 불비,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상실 여부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본 사업의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사업건물을 관계법령, 공사도급계약, 설계서 및 시방서와 안전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시공을 완료하여 2019년 4월 [30]일까지 관계 주무관청으로부터 동 준공에 따른 정식 사용승인(준공필증을 득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부 또는 임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이하 “책임준공의무”)을 득하여야 하는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건축물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시행자 또는 신탁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대주가 판단하여 이를 당사에 통지한 경우 당사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부를 포함하여 대주에게 발생한 일



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할 것입니다.

4. 당사는 본건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인 사업부지의 상태(사업부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포함함)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사업부지가 본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법적·사실적으로 적정한 부지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5. 당사는 본건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에 투입되는 당사의 피고용인, 하도급인 등의 선임, 감독 및 이로 인한 분규와 건설장비 등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본건 건축물의 완공 이전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 발생 이후 지체 없이 당사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를 보수할 것이며 만약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본건 사업의 도급인이 당사의 비용으로 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6. 당사는 본건 건축물의 건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 안전사고, 인근 시설 및 주민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및 손실 기타 제반 민원(시공과 관련된 민원에 한정함)에 따른 일체의 사항들을 시공사의 비용으로 그 전적인 책임하에 처리할 것입니다.
7. 본 책임준공확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책임준공확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출약정서에서 정의,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사는 본 책임준공확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확약서 각 조항에 따른 제반 보증의무를 부담할 것을 확약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본 책임준공확약서에 기명 날인합니다.

책임준공확약인 :

성 종합건설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

서울 도봉구

대표이사 정 종



성 종합건설(주) 정 종

서울특별시도봉구

건설업

건축공사

